



#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60<sup>th</sup> September 2013

- ▶ WHERE IS GRACE CHANG?:  
EYE FOR EYE, TOOTH FOR TOOTH??  
..... 2
- ▶ ABOUT WRITERS  
..... 2
- ▶ COVER STORY:  
한-중 AEO MRA 체결과 우리기업의 활용  
방법  
..... 3
- ▶ FTA NEWS:  
원산지 검증 및 수출 기업의 대응방안  
..... 5
- ▶ VOICES FROM THE FIELDS:  
동남아 제일의 경제동반자, 베트남의 FTA  
투자환경과 관세법령 체계  
..... 7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10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㉞  
..... 12

##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mailto:shinhan@customsservice.co.kr)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http://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http://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Eye for eye, tooth for tooth??**



**장승희**  
**대표 관세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는 샐러리맨인 주인공이 “당하면 당한 만큼 갚는다. 갑절로 되갚아주마.” 라는 대사를 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합니다. 문제는 한 주간지에서 이 대사를 인용하여 “한국에 배로 갚아주마.”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韓國民에 팽배한 反日 감정이 일부 보수우익뿐 아니라 보통의 일본국민들에게까지 反韓 감정이 퍼져나가고 있다 합니다. 우려되는 일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에서 한발 더 나가 두 배로, 갑절로 갚겠다는 섬뜩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웃에 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치유할 수 없는 오래된 감정이다!’, ‘우리가 풀릴 이유가 없다!’, ‘무조건 싫다!’는 많은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막연한 이유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가 산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이웃나라와 반목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7~8 월 일본의 한국여행객 추이는 작년 동기대비 약 25%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합니다. 또한, 반기문 UN 총장의 인터뷰에 중립성 위반을 조사하겠다고 일본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이번 달 Cover Story 는 AEO 관련 기사입니다. AEO 공인인증은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이 때에 비관세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AEO 인증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중국과의 AEO MRA(상호인정약정)가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FTA News 는 원산지 검증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Voices From The Fields 는 멀리 Vietnam 에 자문관으로 파견가신 **박재호 관세사**께서 보내주신 ‘**베트남의 FTA 투자환경과 관세법령 체계**’ 입니다. 현지의 상황을 생생하게 열정적으로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FTA 특례법의 고시개정과 관세법 일부 개정에 대한 안내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1 년 365 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덕담과 같이 가깝지만 먼 이웃인 일본과도 다정하게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왼편 뺨까지 내주지는 않더라도,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만 양보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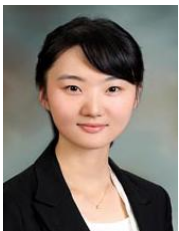
보름달처럼 넉넉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승희드림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  
**관세 법령 변경 -**  
 한-중 AEO MRA 체결과  
 우리기업의 활용 방법



임 보 화 관세사  
[bhlim@customsservice.co.kr](mailto:bhlim@customsservice.co.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前 인천경기 지사
  - FTA Team
  - 수출입 통관, 환급, FTA 컨설팅 및 심사업무 수행
  - 28 기 관세사 수석합격

**FTA News-**  
 원산지 검증 및 수출 기업의  
 대응방안



이 홍 로 관세사  
[hrlee@customsservice.co.kr](mailto:hrlee@customsservice.co.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원산지 관리자
  - 수출입 통관, 환급, FTA 컨설팅 및 심사업무 수행

**Voices From The Fields-**  
 동남아 제일의 경제동반자,  
 베트남의 FTA 투자환경과  
 관세법령 체계



박 재 호 관세사  
[jhpark4321@naver.com](mailto:jhpark4321@naver.com)

- PROFILE**
-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자문관
  - 베트남 전국 산업조합연맹 연수원
  - 국제통상정책 자문·교육담당
  - 前 단국대·배화여대 외래교수
  - 前 한국 관세청 연수원 교수부장 등 국가행정, 공공정책 35년 종사

**RULINGS** ☺  
 수입되는 서적의 적절한 과세  
 가격결정방법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전략기획실 이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前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Cover  
Story

# 한-중 AEO MRA 체결과 우리기업의 활용방법

지난 6 월 27 일 관세청장과 중국 해관총서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외의 임석 하에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협정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체결된 한중 AEO MRA 를 통해 우리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현지통관단계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세관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1. AEO란

AEO는 화주, 관세사, 운송인, 창고업자, 선박, 항공사, 하역업자와 같은 물류주체들 중 세계 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Supply Chain) 안전관리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 하여 자국 세관으로부터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특히, AEO는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상호인정협약(MRA)을 맺은 해외 국가에서도 동등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 한·중 AEO MRA 혜택 및 우리기업의 활용방법

현재는 시범적으로 한국 AEO 수출업체(4개), 중국 AEO 수출업체(8개)에게 MRA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모든 AEO 업체에게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한국의 AEO 기업이면 AEO 등급(A, AA, AAA)에 관계 없이 동등한 MRA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MRA에 따른 혜택 및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수입검사비용 축소

수입신고 시에 신고된 물품의 상대국 수출자가 AEO 공인업체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험평가에

반영하여 검사비용 축소 (AEO기업 간 수입 검사율 : 현행 5% → MRA 후 1% 미만)

정부간 AEO MRA 혜택을 양국이 적용 할 수 있도록 매월 초 각 국가의 공인번호, 공인일자 및 공인부문 등 공인기업의 정보를 교환한다. AEO 공인기업의 인식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통	-AEO 공인기업은 상대국 수출 시 자사의 AEO 공인번호(중국기업 의무) 또는 조합번호(한국기업 의무)를 통보하여야 함. -양국 모두 동 번호 활용 시 시스템에서 자동인식 및 혜택 부여
한국	-한국 수입기업은 상대국 AEO 코드와 연계하여 해외거래처 부호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수입신고 시 입력
중국	-중국 수입기업은 우리 수출자로부터 통보 받은 "조합번호"를 세관신고서 비고(Remark)란에 입력

<표1> AEO 공인기업 인식방법

### (2) 수입서류 심사 간소화

수입신고 시 세관직원이 물품의 품명·규격·수입 요건 및 가격 등 신고 정확성 심사를 사후에

실시

(중국: 현행 사전 서류심사→MRA 후 사후 서류심사, 한국: 여러 건의 수입신고서를 간이한 방법으로 일괄심사)

본 혜택의 적용절차는 국내 수입기업의 경우, 중국 수출자로부터 AEO 공인번호를 확인하여 ①기존 해외거래처부호가 있을 경우 해외거래처 시스템에 공인번호를 추가기재하고 ②해외거래처 부호가 없을 경우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를 발급받아 수출입신고서의 해외거래처 란에 입력한다. 국내수출기업의 경우 중국 수입기업에게 조합번호를 안내하여 세관신고서 비고란에 입력하도록 한다.

(3) 신속통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공인업체임을 확인 한 경우 우선 검사 또는 전용창구를 이용한 통관을 통해 신속통관 가능

AEO 공인기업 전용창구가 마련되어 공인기업 물품으로 인식될 경우,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어, 통관애로 해소 및 신속통관이 가능하다. 현재, 중국 해관은 서류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순서대로 검사를 받는다는 2~3일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나 MRA 체결 후 공인기업은 우선 검사를 통해 검사 소요 기간을 단축(1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 원칙적으로는 先 심사 後 통관이나 AEO 공인기업 간 통관 진행 시 先 통관 後 심사로 진행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기업등급[‘AA’ (AEO업체), ‘A’, ‘B’, ‘C’, ‘D’ (非AEO업체)] 중 ‘AA’ 기업만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어 중국 ‘A’, ‘B’ 기업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先 통관 後 심사 혜택은 받을 수 없다.

(4) 세관 연락관 지정

공인업체가 통관절차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MRA 혜택이 잘 부여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자 지정 (중국 해관 연락관 명단 확보하는

대로 국내 AEO 업체에 알릴 예정)

(사례) 한국의 중소 수출기업으로서 공인기업인 A사는 중국 현지 통관과정에서 이전에는 통관 지연 등의 문제를 직접 어렵게 해결하였으나, 한중 MRA 체결 이후 중국 해관 『연락관』의 도움으로 통관과정의 애로사항 해소, 적기 납품으로 인한 신뢰도 제고 및 통관비용 절감이라는 이중효과를 얻었다.

(5) 비상시 특별조치

천재지변, 파업, 테러 등으로 인한 물류장애로 정상적인 수출입 통관이 불가능할 경우 특별대우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AEO기업의 물품에 대하여는 상기의 우대조치를 지속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물류장애 및 검사비율 확대 등의 위험(통관지연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가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 및 뉴질랜드와 AEO MRA를 체결한 바 있으며, 금번 중국과의 체결로서 총 6개국과 AEO MRA를 맺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최대 교역국가로서, 통관단계의 비관세장벽이 금번 MRA 체결로서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교역이 많은 중소수출기업이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AEO 공인을 획득 함으로써, 중국과의 통관에 애로사항이 해결되고, 아울러 확대될 타 국가와의 MRA 체결에도 더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임 보 화

[bhlim@customsservice.co.kr](mailto:bhlim@customsservic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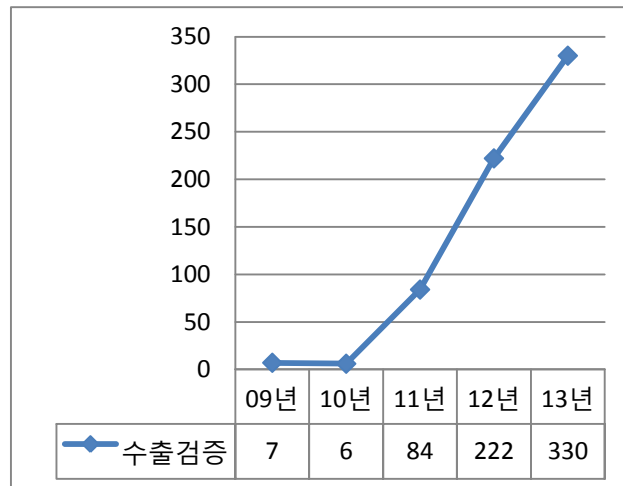
## 원산지 검증 및 수출 기업의 대응방안

### 1. 개요

FTA 가 체결됨에 따라 FTA 를 통한 교역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짐에 따라 최근 FTA 를 활용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원산지 검증(Verifications)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거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취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원산지 검증을 하는 이유는 불공정무역행위 근절, FTA 활용에 따른 부당이득 회수 등 FTA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원산지 검증 현황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아래의 자료와 같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 2013 년 검증실적은 전반기 165 건을 토대로 한 수정치 임.

원산지 검증 요청이 접수된 품목은 최근 5 년간 자동차부품(51 건), 석유화학(48 건), 섬유·의류(42 건), 일반기계(33 건), 생활용품(30 건), 철강(10 건) 등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다.

### 3. 원산지 검증 원칙 및 유형

일반적인 원산지 검증은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또는 당해 물품의 거래, 유통, 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수입신고수리 후 조사 원칙 :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 검증 실시
- 서면 검증 우선 원칙 : 서면검증을 우선 실시 후 필요시에 현장 검증 실시
- 수입자 검증 우선 원칙 : 국내수입자를 검증 후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 검증

FTA 원산지 검증에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검증하는 '직접검증'과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검증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된다. 칠레·싱가포르·미국 FTA의 경우에는 직접검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EFTA·EU·터키 FTA의 경우에는 간접검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외의 FTA인 페루·아세안·인도의 경우에는 혼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4.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원산지 검증결과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증빙서류의 형식적인 요건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검증 기관으로부터 원산지가 불인정될 경우 위반 형태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국내 수출업체 가운데 원산지 검증을 수감한 324 개 업체 가운데 49 개 업체가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FTA 특혜관세 혜택 배제를 통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 5. 수출 기업의 대응방안

수출기업의 신성장 지대로 평가 받는 FTA 시장에서 관세혜택이 배제되는 상황은 경쟁업체와의 비교평가에서 뒤쳐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원산지 관리전담자를 두어 각 협정별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숙지하게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후에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여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자료 (BOM, 원가자료 등)를 검토하고 보완한 자료를 5 년간 반드시 보관하여 원산지 검증의 숙련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나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하는 EFTA·EU·터키·칠레·미국 등의 FTA를 활용하는 기업은 상대국 세관에서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바, 원산지 검증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일 조사당국에서 검증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여야만 하며,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외부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판단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홍로

[hrlee@customsservice.co.kr](mailto:hrlee@customsservice.co.kr)



# Voices From The Fields

## 동남아 제일의 경제동반자, 베트남의 FTA 투자환경과 관세법령 체계

**베**트남 하노이에 온지 거의 1 년이 된다. 공직생활 33 년을 정년퇴직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2013.9.10 도착한 것이 엇그제 같은 데 벌써 그렇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소감이 있지만 나의 전직 업무와 관련하여 볼 때, 베트남이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상당히 개방지향적이라는 것이 인상적이다. 베트남어 신문은 아직 읽을 수 없어 매일 영어신문을 보니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어느 나라와도 유대관계를 맺는 데 적극적이고 주변국가와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 특히,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칠레, 베트남 등 12 개국이 참여하는 지역경제협정, 2013 년말 타결 목표),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SEN 10 개국 + 한국, 일본, 중국 등 6 개국이 참여하는 지역경제협정) 같은 대규모 다자간 지역협정 협상참여 뿐만 아니라, 한국, EU, EFTA, 러시아와의 FTA 체결추진 등 양자간 협정에도 상당히 적극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2015 년까지 양국간 교역규모 200 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 등 약 3,000 개의 한국 업체가 3,250 건에 약 250 억 달러(2013.3.20)를 투자함으로써 베트남내 투자국중 사업건수면에는 1 위, 금액면에서는 4 위(일본, 대만, 싱가포르 다음)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간의 통상관계는 서로 보완적이며 직접 경쟁하지 아니하는 수출입 물품 구조이다' (2013.4.25 베트남 산업무역부 아태지역 부국장 표현). 우리나라가 ICT 완제품과 부품, 자동차, 철강, 선박, 항공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고 베트남으로부터는 의류, 농수산물, 원유, 고무, 목재 등 1 차 산품을 수입하는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2012 년의 경우, 한국의 대 베트남 무역흑자가 102 억불에 이르렀다.

만약, 베트남이 ASEAN 은 물론이고 한국, EU, EFTA 와 양자간 FTA 를 체결하고(일본과는 2003 년 이미 체결) TPP, RCEP 같은 지역간 RTA(Regional Trade Agreement)를 체결 하면 아시아, 유럽, 미주, 태평양에 걸치는 거대경제권과 FTA 를 체결하는 것이 된다. 한국에서 FTA 협상과 이행에 종사하던 필자로서는 '과연 이 나라가 그 복잡, 방대, 다양한 FTA 를 모두

소화(이행) 할 수 있을까? 실제 도입, 시행하기 보다는 국제정치, 외교적 목적으로 여기저기 걸치는 것이 아닌가? 마치, 수입물품에 거의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싱가포르 FTA 체결에 적극 나서는 것처럼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베트남에서 현재 생산, 수출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는 물론이고 향후에 종사하려는 업체도 앞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함에 있어 FTA 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고 그에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생산된 물품이 일정한 조건하에 위의 지역에 특별대우(preferential treatment)를 받고 수출되고 또한 수입될 수 있으므로, 그 조건에 맞추어 생산, 수출, 수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조건은 한마디로 ‘원산지자격(originating status)’을 잘 갖추는 것이다. 그 ‘자격결정기준(origin determination criteria)’에 대하여는 어떠한 FTA, RTA 도 반드시 정하고 있다. 본래, 무역, 경제적 목적으로 마련되었던 것이나 요즘은 국제정치, 외교 안보적 목적이 더 고려되는 것 같다.

베트남에 FTA 를 활용하여 투자할 한국 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적어 계획하는 생산, 수출입업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한국에서 필자에게 문의하여 오는 경우도 있다).

첫째, 베트남 내외에서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구상할 때에는 거래하는(또는 하려는) 국가가 베트남과 FTA 를 체결하였는지 (또는 하려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동 거래품목이 FTA 특혜품목에 해당되는지, 원산지자격 부여조건은 어떠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FTA 협정문을 처음보면 그 분량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단념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많은 품목들을 모두 한 업체가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품목만 생산하므로 자기업체 해당품목만 잘 챙겨보면 된다. 특히,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베트남과 경쟁될만한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시장을 확대

하려고 할 경우 베트남의 FTA 추진상황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공장건립은 물론이고 원부자재 구입 도위의 원산지부여조건에 맞게 하여야 한다. 기존 거래선을 FTA 대상국으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베트남 이외의 나라(예; 캄보디아, 미얀마)에 외주(out sourcing)주었던 것을 베트남으로 거두어 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구입가격 상승, 인건비부담 증가 등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FTA 로 인한 혜택(benefits)과 비용 (cost)을 비교할 필요(b/c 분석)가 있을 것이다. 이 때 단기적 비용 증가에 연연하기 보다는 베트남의 전반적 대외경제정책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원산지자격 부여조건 중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을 회사의 기본정책으로 할 것인지,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a)으로 할 것인지, 특정공정기준 (specific process criteria)으로 할 것인지도 정할 필요가 있다. 이 3 가지 기준은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각 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할 필요가 있다.

ASEAN 국가에서는 HS 4 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RVC≥40%)을 기본 원칙으로 하므로 생산자에게 융통성을 넓게 인정 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생산에 투입된 외국산 재료와 생산된 제품간에 일정한 수준의 HS 세번 변경이 일어나면 원산지자격을 인정하므로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그 판정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만, HS 세번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외국산 재료의 품목수가 많으면 일일이 그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FTA 체결 목적에 가장 부합하지만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위하여 회사의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또는 BOM(Bill of Material)을 FTA 규정에 맞게 개선하여야 하며 회계 지식을 갖춘 고급인력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섬유, 의류 제품의 수출이 많은 베트남에서



유의할 것은, 미국은 가장 까다로운 Yarn Forward Rule(原絲기준: 원사를 가지고 의류를 생산하여야 원산 지자격을 인정)를 자기들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EU 의 경우에는 다소 완화된 Fabric Forward Rule (織物기준: 직물을 가지고 의류를 생산하면 원산지 자격을 인정)를 기본원칙으로 하므로 향후 양 진영이 베트남과의 FTA 협상시 어느 정도로 기존입장을 주장할런지 관심이이다.

베트남도 직물을 외국(예; 인도, 중국산 면직물)으로 부터 수입하여 의류를 생산하거나 일부공정을 자국 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인 나라(예: 디자인과 재단을 한국에 의뢰) 또는 환경문제에 덜 민감한 나라(예: 염색을 라오스, 미얀마에 의뢰)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베트남이 체결한 FTA 는 원산지증명서를 공공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산업무역부에서 위임한 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제'인데 EFTA, EU 는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자율발급제'이므로 앞으로 EU, TPP 와의 협상시에도 '기관발급제'를 주장할런지 관심이이다.

'기관발급제' 하에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핵심자료는 생산자, 수출자가 제공 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원산지재료 (material)'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나 '원산지 부여 생산공정(process)'도 재료만큼 중요하다. FTA 체결국간에 행하여진 생산활동은 '누적원칙 (accumulation)'에 따라 합쳐서 고려되므로 '외주 (outward processing)' 또는 '하청(sub-contract)'을 줄 때에는 FTA 체결국인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베트남 내 투자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유념할 것은 베트남 정부의 투자유치 기본정책이다. 필자가 보기 에는, 북부(수도 하노이 이북)지역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 것 같다. 국토(한반도의 1.5 배)의 균형발전과 대중국 교역의 편리성을 고려하는 것 같다. Haipong 항만 및 철도확장, 공단 추가 건설 및 고속도로 신설, 각종 세제혜택 부여도 북부지역 개발과 진출을 지원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북부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베트남의 관세법령 체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 법령체계가 대륙법 형으로 단계적(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시) 으로 되어 있는 점은 전자이고, '해관법', '수출입법' 형태와 세관(해관)공무원이 지방 성(省)·시(市)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과 수출물품(원유, 석탄, 철광, 목재 등 94 개 품목)에도 '국경관문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수출세')하고 '세관사용료'를 내는 것은 후자이다. 법규제정은 중앙정부기관 (재무부, 해관총국)에서 하지만 세관공무원은 지방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법규집행에 있어 효율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 라고 한다. 또한, '정산절차'가 널리 도입되어 있어, 원료수입 후 제조수출, 경제특구·보세구역 내 생산업체의 정기 보고 시 에도 하므로 업체들에게 꽤 부담이 된다고 한다. 수출입 통관은 Paper 와 P/L 을 병행하고 위험도에 따라 Red, Yellow, Green Channel 로 구분하여 검사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2013 년부터 전자통관 시스템을 모든 성(省)에 도입하고 2015 년부터는 전국적 네트워크로 연결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 2005 년 '해관법'을 전면 개정하여 전자통관시스템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관련 업무수행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세관 현장에는 아직 구태의연한 관행들이 남아 있어 FTA 무관세 혜택을 '개인적 특혜' 로 여기며 잘 부여 안하려는 현상도 일부 있는 것 같다.

베트남은 높은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지닌 유망한 투자대상국이다. '다문화 가정', 근로자 등 기존의 활발한 인적 교류와 '한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가능성과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양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바란다.

KOICA 베트남 자문관/관세사  
 박재호  
[jhpark4321@naver.com](mailto:jhpark4321@naver.com)

#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1. 개정이유

○ FTA 확대에 따라 기업이 보다 쉽게 FTA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 필요

### 2. 주요 개정내용

□ 특혜관세 적용절차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발급(제 12 조)

- 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품목을 반복수출하는 경우, 매 1 년의 기간동안 발급기관의 심사생략(접수후 2 시간이 지나면 자동발급)

○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서식 간소화(제 28 조)

□ FTA 집행 과정에 필요한 규정 미비사항 보완

○ 선착순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운영 절차 규정화(제 4 장)

- EU, 미국, 터키와의 FTA 에 따른 총 31 개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 중

○ 원산지 사전심사결과 홈페이지 공개(제 54 조)

- EU, 미국, 인도, 페루, 터키와의 FTA 에서 공표토록 의무화

○ 반복수출하는 동종·종질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제출생략(제 10 조)

- 최근 1 년 이내 동종동질물품이고 동일 수출국인 경우와 최근 1 년 이내 동일재료·동일공정 생산 물품의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후 신청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제 19 조)

□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리

○ 민원인에게 필요한 서식제정

- 사전심사결과 이의제기서(제 55 조),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제 60 조),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서식(제 21 조)

○ 법령과 중복되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방법' 및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절차에 해당 하는 규정 삭제

### 3. 시행일자

2013.9.16(월)

## 관세법 일부개정 입안예고

### 1. 개정이유

설탕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통해 시장경쟁 촉진 및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을 완화 등 현행 제도 미비점 개선 및 보완 목적

### 2. 주요 개정내용

가. 납세자권의 보호를 위해 관세 과세가격조정 결정청구 대상에 특수관계자간의 수입물품 거래 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포함함.

나. 상속·법인합병시 납세의무 승계, 법인 분할·분할 합병시 연대납세의무,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공유자·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등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함.

다. 설탕시장 경쟁촉진 및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잠정세율 적용을 통해 설탕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기본세율 30% → 잠정세율 20%).

### 중략

파.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 보호를 위해 환급청구권자와 수출물품을 재수입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되, 환급청구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재수입하는 자에 대한 면세를 적용함.

하. 수입신고 이후 허위로 보정신청·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출입가격조작죄 및 허위신고죄가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함.

거.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유효기간(3년) 및 갱신절차를 법률에 규정함.

너.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의 번역오류를 수정하고 의미를 명확화하는 등 알기 쉽게 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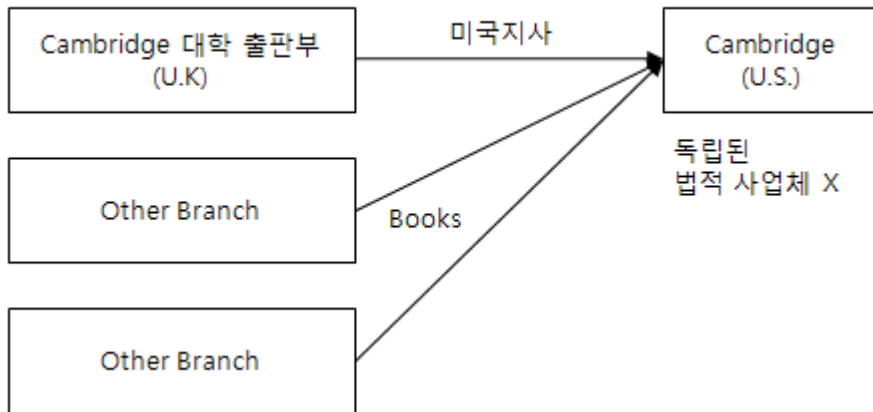
## 세관장확인대상 일부 물품 추가

0307.59-1030	쭈꾸미	[식품위생법]
2105.00-1090	기타	[식품위생법]
2106.90-3029	기타(홍삼제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7321.11-0000	가스연료용 철제조리기구	[식품위생법]
7321.12-0000	액체연료용 철제조리기구	[식품위생법]
7321.19-0000	고체연료용 철제조리기구	[식품위생법]
8108.90-9000	티타늄제의 그릴,팬등	[식품위생법]

※시행일 : 2013.09.01 일 수입신고분 부터 적용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임 보 화  
[bhlim@customsservice.co.kr](mailto:bhlim@customsservice.co.kr)

## 수입되는 서적의 적절한 과세가격결정방법 (HQ548698 2005.10.04)



### □ 거래사실(Facts)

- Cambridge(이하 "I" 즉, 수입자)는 영국 Cambridge 대학 출판부(이하 "S")의 미국 지점임
- I는 어떠한 법적인 지위도 가지지 못하며, S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함
- I는 다른 자매관계인 다른 지점으로부터 서적을 주문하여 수입
- 서적은 Champlain 항구와 JFK 국제공항으로 수입됨
- 2004년 6월 Champlain에 있는 세관은 "합리적인 방법" Fall-back Method에 따라 가격결정공식(formular)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였음 (List Price를 기초한 Title의 평균 판매가격에서 서적류에 대하여 적용되는 평균 할인금액을 차감한 가격)
- I를 포함한 S의 여러 지점들은 다른 지점들로부터 해당 지점의 판매가격에 60%~70% 정도(수입국 내의 예상고객, 동일한 종류의 제목을 가진 서적의 예상 시장규모 등에 기초하여 조정)의 할인을 적용하여 서적을 구매하게 됨
- I를 포함한 각 지점들이 서적을 구매하는 가격에는 제조비용, 일반경비, 총경비와 이윤이 반영된 것임
- 이전가격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물품의 원가는 초판 인쇄와 후속판 인쇄의 경우에 각 각 달라질 수 있음

### □ 쟁점(Issue)

수입되는 서적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 1. 1 방법의 적용여부

가. 관세평가는 우선적으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하여야 가격에 법으로 정하고 있는 5 가지의 요소를 가산하여 정해지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함

나. "판매"라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임 (관련 판례 J.L. Wood v. United States, 1974)

다. 미국 관세청은 TAA 하에서의 판매의 정의를 고수해 오고 있음

라. 본 건에서 I 와 S 는 동일한 법적 사업체이고, 이들 사이에 서적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것이 때문에 이는 판매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Mitsui & Co., Ltd. V. US. 1972)

마. 판매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or similar goods), 역산가격(deductive value), 산정가격(computed value)

### 2. 2 방법 또는 3 방법의 적용여부

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과 평가대상이 되는 당해 수입물품이 같은 상업적 수준에서 거래된 것 (같은 수량으로 거래된 것)이고,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시점과 동일한 일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된 것이어야 함

나. I 의 법률 고문에 따르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판매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2 방법,

3 방법은 적용될 수 없음

### 3. 4 방법의 적용여부

가. 역산가격법 하에서는 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수입 일로부터 90 일 전에)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되는 단위가격에 기초하여야 함

나. I 의 법률 고문에 따르면 I 가 수입하는 서적은 90 일 이내에는 판매되지 않거나, 미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서적은 판매지점으로 반환되기 때문에 4 방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함

### 4. 5 방법의 적용여부

가. 산정가격법 하에서의 과세가격은 수입된 물품의 생산에 따른 원료비용과 제조비용을 기초로 결정하며 동종·동류의 물품 판매에 반영되는 이윤과 일반경비 및 생산지원비용과 포장비용을 가산하여 산출함

나. I 의 법률고문은 I 가 미국으로 수입하는 Title 별 각 각의 판에 대하여 산정가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본 결과, 다음의 이유로 인해 산정가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

- 1) 서적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중 어느 특정의 비용은 각 Title 별로 별도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
- 2) I 는 하나의 용기에 많은 Title 의 서적을 수입할 것이므로, 각 각의 Title 이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 그것이 출력되었는지 결정할 수 없기 때문

### 5. 기타의 방법 적용

가. 1 방법 내지 5 방법에 의해 수입물품의 가치(Value)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값을 기초로 합리적인 조정 통해 가치를 결정할 수 있음

나. 다만, 수출국 내에서의 시장가격,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미국 내 판매가격, 임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은 평가목적상 사용할 수 없음

다. 관세법의 규정 하에서 평가담당부서의 담당자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수입물품의 가치를 확정하거나 또는 추정하는 것을 최종적인 평가방법으로 보았음 -> 관세법의 규정하에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담당자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보유함

라. 본 사안의 경우 1 내지 5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타의 합리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최종적으로는 I가 해외지점인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이전 가격에 기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마. 관련 사례 예시 (HQ546941 '99,9,11, HQ546953 '99,5,5)

- 1)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가격은 할인보다 낮은 가격표에 기초하여 가격을 결정함
- 2) 미국 관세청에서는 제 6 방법 하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된 거래가격이 평가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음
- 3) 여기에서 판매자는 다른 유통업자에게 물품을

제공함에 있어서 할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제공 되었음

4)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할인이 부적절하거나, 과하지 않다고 인정

바. 비록 본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유통업자에게 할인이 제공되는지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진 않았지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할인된 금액이 제조비, 일반경비, 이윤을 반영하고 있음이 증명되었음

사.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I 가 지급한 할인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 결정(Holding)

미국으로 수입되는 서적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I 가 I 와 특수관계에 있는 지점에 지급하는 할인된 금액을 합리적인 조정을 거친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